| 의 안 | 번 호 | 제     | ই  |
|-----|-----|-------|----|
| 의   | 결   | 2020. |    |
| 연 - | 월 일 | (제    | 회) |

의 결 사 항

온 라 인 플 랫 폼 중 개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제 정 법 률 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정세균<br>(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
| 제출 연월일 | 2020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 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또는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와 관련한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전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EU,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되는 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

-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에게 주요 거래조건 및 분쟁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부여

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안 제6조3항)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중개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은 부인함

####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안 제8조)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서비스의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계약 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 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금지

-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금지(안 제10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안 제11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함

# 자. 서면실태조사(안 제2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차. 시정명령(안 제25조)

-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 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 개서비스업자에게 법위반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카. 동의의결(안 제27조)

- 조사(심의) 대상 사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 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

#### 타. 과징금(안 제29조)

-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파. 벌칙(안 제33조)

-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와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하. 과태료(안 제35조)

-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 거나,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1억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 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 대료를 부과)

- 4)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비스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 심판정에서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9. 28. ~ 11. 9.)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0건

법률 제 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플랫폼"이란 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 6.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및 배송 지원, 고객관리 등 각 종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 7. "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을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 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이 법 제9조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 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 2. 중개계약 기간, 계약 갱신 절차,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 계약해지사유 및 절차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
- 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 5.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
-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 등의 판매가격, 판매방식, 판매 량, 배송방식, 결제방식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 8.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 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 1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 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
- 1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14. 그 밖에 중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불

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 랫폼 중개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중개계약내용 변경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계약의 변경은 그효력이 없다.
- 제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7일이전에,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계약의 해지는 그효력이 없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를 전가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br/>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중개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7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3. 제23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 제11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 제12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 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 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④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

-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위촉일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 록 결정한 사항
- 2. 협의회 내부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 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는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 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률 •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②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각하한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6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 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과 관 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6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조정의 신청으 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제18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

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경우
-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16조의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경우
- 3.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

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 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 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2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

-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0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21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25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6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 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 스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1.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 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명령,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 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

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해당 행위의 개요
- 2. 관련 법령 조항
- 3. 시정방안(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 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⑦ 이 밖에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1조의4를 준용한다.
- 제28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

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 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 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다.
-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제31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

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준용한다.
  -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를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 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2.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과태료)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6.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 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제36조(고발) ① 제33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3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4486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 <목 차>

- 1.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적용범위
- 2.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 3.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계약내용 변경 및 제한 등의 사전통지
- 4.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5.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 6.서면실태조사 근거 신설
- 7.법 위반 중개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8.동의의결을 신청한 중개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이름  | 윤상혁              |
|----------|-------------|---------|--------|-----|------------------|
| 소관부처 및   | 담당부서<br>(과) | 시장감시총괄과 | 작      | 직급  | 행정사무관            |
| 작성자 인적사항 | 국장          | 송상민     | 성<br>자 | 연락처 | 044-200-4486     |
|          | 과장          | 이동원     |        | 이메일 | ysh8843@korea.kr |

2020. 8. 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 규제 개요 >

|            | 1.규제사무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적용범위                                                                                                                                                                                                                                                                                                                                                                                                                                                                                                                                                             |  |  |  |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  |  |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            | 4.유형                                                                                                                                                                                            | 신설 <b>5.입법예고</b> 2020.09.28 ~ 2020.11.09                                                                                                                                                                                                                                                                                                                                                                                                                                                                                                                                        |  |  |  |  |
| 규제의<br>필요성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br>심화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10)25.2조→(15)54.1.조→(19)135.3조  ○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산업분야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  ○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플랫폼이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게이트키퍼)  □ 높아진 거래의존도 및 독점적 판로확보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의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 증가  * 중기중앙회 실태조사('18) 결과 오픈마켓 등 입점업체의 37~41%가 불공정행위 경험,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19)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60.8%의 불공정행위 경험  ○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 분야일수록 초기부터 건전한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한 룰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나,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한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 |  |  |  |  |
|            | 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개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  ○ (역외적용)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준거법률에 된 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하여 적용  ○ (규모요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제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 |                                                                                                                                                                                                                                                                                                                                                                                                                                                                                                                                                                                 |  |  |  |  |
|            | 8. 피규제집단 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 숙박업소, 중소유통을 이해관계자 입점업체)                                                                                                            |                                                                                                                                                                                                                                                                                                                                                                                                                                                                                                                                                                                 |  |  |  |  |
|            | 9.도입목표 및 이 (도입목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 (투명성) 플랫폼 이용 거래조건 사전공개 및 분쟁해결절차 미                                                                                       |                                                                                                                                                                                                                                                                                                                                                                                                                                                                                                                                                                                 |  |  |  |  |

|            |                        | - (공정성) 플랫  | - (공정성) 플랫폼-입점업체 간 대등한 관계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  |          |     |   |          |  |
|------------|------------------------|-------------|----------------------------------------|----------|-----|---|----------|--|
|            |                        | ㅇ (기대효과) 플링 | ㅇ (기대효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해 온 |          |     |   |          |  |
|            |                        | 라인 플랫폼 분야   | 라인 플랫폼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반 소비자의 편   |          |     |   |          |  |
|            |                        | 익 증대        |                                        |          |     |   |          |  |
|            |                        |             |                                        | 비용       | 편 익 |   | 순비용      |  |
|            |                        | 피규제자        |                                        | 1,061.47 | 0   |   | 1,061.47 |  |
|            |                        | 피규제자 이외     |                                        | 0        | 0   |   | 0        |  |
|            | 10.비 <del>용</del> 편익분석 | 정성분석        |                                        |          |     |   |          |  |
| 규제의<br>적정성 | (단위:백만원)               | 주요내용        |                                        |          |     |   |          |  |
|            | 11.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기      | <b>'</b> }                             | 경쟁영      | 향평가 | 중 | 기영향평가    |  |
|            | 여부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 해당없음     |  |
|            | 1 2 . 일 몰 설 정<br>여부    | 해당없음        |                                        |          |     |   |          |  |
|            | 13. 우선허용·              |             |                                        |          |     |   |          |  |
| 기타         | 사후 규제                  | 해당없음        |                                        |          |     |   |          |  |
| 71-1       | 적용여부                   |             |                                        |          |     |   |          |  |
|            | 14.비용관리제               | 적용여부        |                                        | 비용       | 편 익 | 연 | !간균등순비용  |  |
|            | (단위:백만원)               | 미적용         | 1                                      | ,061.47  | 0   |   | 140.18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 |
|     | 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     |
|     | 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   |
|     | 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
|     | 이용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재화 등    |
|     | 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
|     |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
|     | 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②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
|     |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    |
|     | 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  |
|     |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  |
|     | 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    |
|     | 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   |
|     | 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
|     | 다.)                    |
|     |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ㅇ통해     |
|     |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
|     |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    |
|     | 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
|     | 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
|     |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    |
|     | 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
|     | 을 기준으로 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③ 이 법 제9조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
|     |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     |
|     | 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    |
|     | 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
|     |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④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
|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
|     | 고려하여 판단한다.             |
|     |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
|     | 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  |
|     | 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   |
|     | 용 집중도                  |
|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  |
|     |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    |
|     | 능력의 격차                 |
|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
|     | 플랫폼 중개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거    |
|     | 래의존도                   |
|     |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
|     |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
|     |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⑤ 제4항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
|     | 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
|     | 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를     |
|     |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     |
|     | 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10)25.2조→(15)54.1.조→(19)135.3조
  -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산업 분야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
  - o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플랫폼이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게이트키퍼)
- □ 높아진 거래의존도 및 독점적 판로확보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 증가
  - \* 중기중앙회 실태조사('18) 결과 오픈마켓 등 입점업체의 37~41%가 불공정행위 경험,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19)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60.8%의 불공정행위 경험

# <주요 문제행위 유형>

- o (경영간섭행위) 입점업체의 판매가격·거래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
  - \*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대하여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최저가보장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20.6월)
- (불이익제공행위)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에 불리한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사례('20.4월)
- (부당한 손해전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도록 강제
- □ 그러나,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별도법을 제정하여 대응할 필요

- o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미적용
-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등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근거규정이 전혀 없어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sup>\*</sup>
  - \*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지위, 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       | 대안명   |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br>대해 적용                                                                     |
|-------|-------|--------------------------------------------------------------------------------------------------------|
| 규제대안1 | 안1 내용 | 매출액 또는 판매가액 등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br>충족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br>서만 법을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온라인<br>플랫폼에 대해서는 미적용 |
|       | 대안명   | 모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해 적용                                                                              |
| 규제대안2 | 내용    | 규모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온라인 플랫폼<br>중개서비스업자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                                                       |

# o 규제대안의 비교

| 구분    | 장점              | 단점                |
|-------|-----------------|-------------------|
|       |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                   |
|       | 대해서는 제정안의 의무가   |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라 하  |
| 그 테디아 | 부과되지 않게 되므로 과도  | 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
| 규제대안1 | 한 규제로 인해 기업 및 산 | 발생할 수 있어 법적용의 사각  |
|       | 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 지대가 생길 수 있음       |
|       | 막을 수 있음         |                   |
| 그레데아  | 사업자의 규모와 무관하게   | 모든 규모의 사업자에 대해 법  |
| 규제대안2 | 모든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  | 을 적용할 경우, 법준수를 위해 |

| 으로  | 하          | 므로  | 법  | 위반  | 에 | 따른 |
|-----|------------|-----|----|-----|---|----|
| 피해를 | ₽          | 줄이_ | D. | 을의  | 지 | 위에 |
| 있는  | 사          | 업자  | 를  | 두텁. | 게 | 보호 |
| 할 수 | . <u>ე</u> | [음  |    |     |   |    |

과도한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어 산업 및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                         |      |
|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오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자 및 사업 유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존재
  - 제정안에서 규모 요건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어 성장 동력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아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 법적용 대상이 되도록 적용범위위 조항을 마련
- ※ 다만, 타법(대규모유통업법)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매출액 100억 원 및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을 법적용 대 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 3. 규제목표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보완해나가며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모가 작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이 어렵다는 점,
   사업 초기부터 법 적용 시 혁신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만 법 적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타당
  -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적 성장산업임으로 사업 초기에 있는 사업자 에게까지 법을 적용할 경우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
- 따라서, 규모를 기준으로 법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적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에 해당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sup>\*</sup>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없음
- \* 시행령 제정 시 규모요건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가액(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할 예정

# o 기타 고려사항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을 법적용 대상이 되도록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포괄적<br>개념<br>정의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br>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br>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br>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br>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br>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br>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br>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네거티브<br>리스트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br>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br>하기 위한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br>적용                                                  |
| 사후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

| 평가관리       |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규제<br>샌드박스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br>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br>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br>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EU는 온라인 플랫폼과 상업적 이용자(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공정성·투명성 규정 제정(19.7월) 및 시행('20.7월)하였으며, 별도의 규모 규정 없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EU 공정성·투명성 규정

#### 제1조 규제대상 및 범위

- 1. 이 규정의 목적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자, 온라인 검색 엔진과 관련된 산업적 웹 사이트 이용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 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 다.
- 2. 이 규정은 EU 내에 소재지를 둔 상업적 이용자와 상업적 웹 사이트 이용자가 EU 내에 위치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중 개서비스와 온라인 검색엔진에 그 주소지와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o 타법사례

-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은 법 적용 대상의 규모요건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가맹사업거래법 제3조(적용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 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해 적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1,061.47백만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br>(년) | 할인율(%) | 단위           |
|--------|--------|---------------|--------|--------------|
| 2020   | 202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 1 : 일정규 | ·모 이상의 온라인 플 |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 자에 대해 적용 |
|--------------|--------------|------------|----------|
| 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 기업 직접    | 1,061.47     |            | 1,061.47 |
| · 소상공인 간접    |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              |            |          |
| 국민           |              |            |          |
| 정부           |              |            |          |

| 총 합계  | 1,061.47 |         | 1,061.47 |
|-------|----------|---------|----------|
| 기업순비용 | 1,061.47 | 연간균등순비용 | 140.18   |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법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인가능 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일부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제도,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미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소요가 과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소관 법률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6.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 보고

□ (7.7.) 법 제정 추진단 구성(단장 : 사무처장, 부단장 : 시장감시총괄과장)
 □ (7.31.~9.18)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입점업체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기타(승차중개 등) / 종합간담회
 \* 플랫폼사업자 : 포털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9.17.),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 2. 향후 평가계획

 지속적 시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규제 대상의 규모요건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임

### 3. 종합결론

- □ 규모가 작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이 어렵다는 점, 사업 초기부터 법 적용 시 **혁신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만 법 적용대상으로 설정
  - 직전사업년도에 자신이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 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진 재화 등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법 적용
  - ※ 다만, 타법(대규모유통업법) 기준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억원 및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 1,000억원이상의 플랫폼을 법적용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br>(년) | 할인율(%) | 단위           |
|--------|--------|---------------|--------|--------------|
| 2020   | 202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일정규도 |    | 그 이상의 | 온라인   | 플링  | 뱃폼 | 중개서비- | 스업자 | 에 대해 | 적용       |
|--------------|----|-------|-------|-----|----|-------|-----|------|----------|
| 영향집단         | =  | Н     | 용     |     |    | 편익    |     | 순    | 비용       |
| 피규제 기업       | 직접 |       | 1,061 | .47 |    |       |     |      | 1,061.47 |
| · 소상공인       | 간접 |       |       |     |    |       |     |      |          |
| 피규제 일반       | 국민 |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    |       |       |     |    |       |     |      |          |
| 국민           |    |       |       |     |    |       |     |      |          |
| 정부           |    |       |       |     |    |       |     |      |          |
| 총 합계         |    |       | 1,061 | .47 |    |       |     |      | 1,061.47 |
| 기업순비용        | 5  |       | 1,061 | .47 | 연. | 간균등순비 | 용   |      | 140.18   |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해 적용〉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정량)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
|---------|-----------------------------------------------------------------------------------------------------------------------------------------------------------------------------------------------------------------------------------------------------------------------------------------------------------------------------------------------------------------------------------------------------------------------------------------------------------------------------------------------------------------------------------------------------------------------------------------------------------------------------------------------------------------------------------------------------|
| 활동제목    | 법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범위                                                                                                                                                                                                                                                                                                                                                                                                                                                                                                                                                                                                                                                                       |
| 비용항목    | 노동                                                                                                                                                                                                                                                                                                                                                                                                                                                                                                                                                                                                                                                                                                  |
| 비용      | 1,061,470,320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연간균등                                                                                                                                                                                                                                                                                                                                                                                                                                                                                                                                                                                                                                                                                            |
| 사실 -    | 연간 투입인원X연간 투입시간X시간당 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1*500*35046*8))                                                                                                                                                                                                                                                                                                                                                                                                                                                                                                                                                                                                                                                  |
| 근거설명    | <ul>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주요 내용 중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및 계약관련 사항의변경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함</li> <li>-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없을 것으로 보임</li> <li>- 다만, 계약서의 작성·교부·보관 및 계약 관련 사항의 변경에따른 사전통지 의무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의무로서이 경우 사업자에게 새롭게 업무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제도마련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li> <li>1. 연간 투입인원 : 1명</li>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li> </ul> |

하는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시행령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가액 합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것으로 가정

- \*\* 1명의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
- 2. 연간투입시간: 500시간(연간 가용일수)
  - ㅇ 근무일당 2시간\*250일=500시간
  - \* 법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sup>①</sup>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 관 등의 의무 수행을 위한 근무시간 1일 1시간 + <sup>②</sup>계약 내용 변경시 사전통지를 위한 근무시간 1일 0.5시간 +<sup>③</sup>중개서비스의 제한 등이 있 는 경우 사전통지를 위한 근무시간 1일 0.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
- 3. 시간당 근로임금 : 35,646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에서 '20.5월 기준 300인 이 상 정보통신업의 상용임금총액(5,464,544원)을 상용총근로 시간(153.3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평균 임금은 35.646원
- 4. 피규제자 수: 8개
  -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매출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체 매출액의 약 10%수준으로 알려져있으므로 전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관련 업계 비공식 문의결과)
- ② '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신규 벤처기업은 15개사 (중기부·벤처기업협회 통계)
- ③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신규 벤처기업 중 약 1/3(34%)가 4차 산업관련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할 때 매년 5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중기부·벤처기업협 회 통계)
- ④ '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존 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반서비스 기업은 24개사로, 분석기간인 10년 기준 연평균 2.4개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중기부·벤처기업협회 통계)
- 최초 법제정 후 법규정에 맞게 양식, 업무프로세스 등을 수정한다면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없음
- ⑤ 따라서. 매년 약 8개 업체가 피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가정
- □ 직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및 플랫폼 이용 입점업체                                                                                                    |
|---------|----------------------------------------------------------------------------------------------------------------------------------|
| 활동제목    |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부과 및 주요 계약 변경에 따른<br>사전통지 의무                                                                                     |
| 편익항목    |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분쟁예방 효과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O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부과 및 주요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을 통한 편익은 각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므로 편익을 계량하기가 매우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 근거설명    | O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乙의 지위에 있는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                              |
|         | -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제정·공개된 전자약<br>관에 입점업체가 동의하고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br>식으로 진행되므로,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을 위한<br>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 - 오히려,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계약 관련 주요<br>사항의 변경 시 일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므로 양 당사<br>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br>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 □ 간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및 입점사업자           |  |  |
|-------------|-----------------------------------|--|--|
| 활동제목        |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부과 및 계약 관련 주요 내용 변 |  |  |
| 월 등 세 독<br> | 경시 사전통지                           |  |  |
| 편익항목        | 신성장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충                 |  |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             | ㅇ 현재처럼 플랫폼과 입점엄체간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  |  |
| <br>근거설명    |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  |
|             |                                   |  |  |
|             | ㅇ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  |  |

|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등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
|-----------------------------------|
|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
|                                   |
| - 이를 위해 계약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
| 의무 및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함으   |
| 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신성장 산업인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
|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속적 성장의 토대 마련 가능 |
|                                   |

| (       |                                                                                                                                                                                                                    |  |  |
|---------|--------------------------------------------------------------------------------------------------------------------------------------------------------------------------------------------------------------------|--|--|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  |  |
| 활동제목    |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
| 편익항목    |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 마련 및 법적 불안정성 해소                                                                                                                                                                                        |  |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 근거설명    | <ul> <li>적용범위 규정을 통해 제정안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br/>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br/>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음</li> <li>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 및 법원의 최종 판단을<br/>통해 문제를 해결 할 경우,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갈등비<br/>용 증가 등으로 인해 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li> </ul> |  |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 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일반 국민                                                                                                                                                                                                                                                    |
|---------|-------------------------------------------------------------------------------------------------------------------------------------------------------------------------------------------------------------------------------------------------------------------------|
| 활동제목    |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부과 및 계약 관련 주요 사항 변<br>경시 사전통지                                                                                                                                                                                                                           |
| 편익항목    | 온라인 플랫폼 이용 편의 증대 및 서비스, 용역의 가격·서비스<br>경쟁으로 인한 편익 증대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ul> <li>오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건전한 거래환경이 형성되어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더 많은 업체의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익이 증대됨</li> <li>또한,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산업내 신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가 유입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음</li> </ul> |

# < 규제 개요 >

|            | 1.규제사무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           |                            |  |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조, 제29<br>조                                                                                                                            |           |                            |  |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            | 4.유형                       | 신설                                                                                                                                                                    | │5 인번예고 │ | 2020.09.28 ~<br>2020.11.09 |  |  |
|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분쟁발생 시 명시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입점업체의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 - 이에, 유사한 다른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도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 교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                            |  |  |
| 규제의<br>필요성 | 7.규제내용                     | ○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일정기간 동안 계약서 보관의무에 대해 규정(안 제6조)<br>○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를 부과할 수 있도록함(안 제29조) |           |                            |  |  |
|            | 8. 피 규제 집 단<br>및<br>이해관계자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br>○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 숙박업소, 중소유통업자 등<br>입점업체)                                                                                        |           |                            |  |  |
|            | 9.규제목표                     | O 주요 계약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함으로써, 분쟁의 사전예방 및 입점 중소상공인 보호 효과 증대                                                                                                       |           |                            |  |  |
|            | 10.영 향평가<br>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
| 규제의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적정성        | 11. 비용편익<br>분석<br>(정성분석)   |                                                                                                                                                                       |           |                            |  |  |
| 71-1       | 12.일몰설정<br>여부              | 해당없음                                                                                                                                                                  |           |                            |  |  |
| 기타         | 13. 우선허용·<br>사후 규제<br>적용여부 | 해당없음                                                                                                                                                                  |           |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6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
|     |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
|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려는      |
|     | 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이     |
|     | 하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   |
|     |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온라    |
|     | 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계약    |
|     | 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    |
|     | 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     |
|     | 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
|     |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    |
|     | 공하여야 한다.                |
|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   |
|     |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
|     |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
|     |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     |
|     | 차                       |
|     | 2. 중개계약 기간, 계약 갱신 절차, 계 |
|     | 약 내용 변경 시 절차, 계약해지 사유   |
|     | 및 절차                    |
|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개   |
|     | 시, 제한, 정지 등의 기준 및 절차    |
|     | 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
|     | 절차 및 기준                 |
|     | 5.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
|     | 지급 절차, 방식, 시기           |
|     |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
|     |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재화      |
|     |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
|     | 및 그 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     |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   |
|     | 등의 판매가격, 판매방식, 판매량, 배  |
|     | 송방식, 결제방식 등 결정에 관한 온   |
|     | 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관여     |
|     |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
|     | 8.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  |
|     | 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     | 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
|     | 분담 기준                  |
|     | 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  |
|     | 하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    |
|     | 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
|     |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온라인 플랫    |
|     | 폼 이용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
|     |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
|     | 포함한다.)                 |
|     | 1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
|     |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    |
|     | 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    |
|     | 해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인    |
|     |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
|     |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
|     | 대한 내용 및 기준             |
|     | 1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 |
|     | 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    |
|     | 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
|     |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    |
|     | 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
|     | 방식 및 조건                |
|     |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
|     |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

| 현 행 | 개 정 안                  |
|-----|------------------------|
|     |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    |
|     | 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
|     | 14. 그 밖에 중계계약 당사자의 권리· |
|     |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사항                 |
|     | ② 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   |
|     | 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     | 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   |
|     | 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
|     |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 |
|     | 인을 하여야 한다.             |
|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   |
|     | 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
|     | 의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
|     | 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온라인 플   |
|     | 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    |
|     | 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
|     |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불공정한 내용    |
|     | 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    |
|     | 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
|     | 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제정하고     |
|     |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할 필요(안 제6조)
  - 는쟁발생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입점업체의 대응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서도 해당 규정을 두고 있으며,
    - \* 히도급법, 기맹시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모두 甲 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부여
  - 온라인 플랫폼과 서면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sup>\*</sup> 하므로, 해당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입점업체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음
    - \* 법제연구원 온라인 유통플랫폼 불공정행위 현황 조사('19년) 결과 합의된 서면계약서 부재를 경험한 입점업체 비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아울러,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규정을 도입할 경우 중요한 거래조건이 포함된 서면계약서가 제공됨에 따라, 분쟁예방 및 입점업체 보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       | 대안명 |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부과 및 필수기재사항<br>규정                                               |
|-------|-----|---------------------------------------------------------------------------------|
| 규제대안1 |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br>및 서면 계약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반<br>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기재사항을 규정 |
|       | 대안명 |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부과                                                              |
| 규제대안2 |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br>서면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하되, 계약<br>서에 포함될 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 |

# o 규제대안의 비교

| 구분    | 장점                                                                                                | 단점                                                                                          |  |
|-------|---------------------------------------------------------------------------------------------------|---------------------------------------------------------------------------------------------|--|
| 규제대안1 | o 주요 분쟁사유가 될 수<br>있는 사항이 계약서에<br>필수적으로 포함<br>-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br>예방하고, 분쟁발생시<br>원활한 해결 유도 가능       | o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구<br>체적인 계약내용은 계약 당<br>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br>사안이라며 명시적인 규정<br>신설에 반대할 가능성        |  |
| 규제대안2 | <ul> <li>계약이 성립할 경우 반드시<br/>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점<br/>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br/>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br/>보관</li> </ul> | <ul> <li>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li> </ul> |  |

### ㅇ 규제대안 선택근거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乙의 지위에 있는 입점업체 보호 강화
  - ·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제정·공개된 전자약관에 입점 업체가 동의하고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을 위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                         |      |
|        |                         |      |

# 3. 규제목표

□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계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통해 乙의 지위에 있는 입점업체의 대응능력 제고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사전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시 입점업체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와 필수기재시항을 규정하는 것은 계약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것으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으로 타당함
  - 분쟁발생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입점업체의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
- □ 계약서 작성·교부·보관의무 부과 및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규정을 통해 제고되는 예측가능성, 분쟁예방효과 및 분쟁발생시 입점업체 보호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과태료 규정은 계약서 관련 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없음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관계 개선을 목표로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조 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예방을 위해 계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포괄적<br>개념<br>정의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br>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네거티브<br>리스트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사후<br>평가관리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규제<br>샌드박스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미적용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EU는 온라인 플랫폼과 상업적 이용자(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공정성·투명성 규정 제정('19.7월) 및 시행('20.7월)

#### EU 공정성·투명성 규정

#### 제3조 약관

- 1.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b) 계약 이전 단계를 포함하여 상업적 관계의 모든 거래단계에 걸쳐 상업적 이용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 (c) 상업적 이용자에게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중단, 종료 등 어떠한 형태의 제약을 가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상업적 이용자에게 제안된

약관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통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서는 아니되며, 통지 기간은 변경 사항의 성격과 범위, 상업적 이용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통지 기간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 관련 상업적 이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온 라인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상업적 사용자가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적 또 는 상업적 적응이 필요한 경우 더 긴 통지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 중략 -

3.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 2의 내용과 다르게 약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약관 전체 또는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 제7조 차별적 취급

- 1.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상업적 이용 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일반적 상업적 이용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서비 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설명은 주요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률적 고려사항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2.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상업적 웹사이트 이용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일반적 상업적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 특정 계약조건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상업적 이용자 간 계약관계가 선의와 공정성에 기초해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법률 또는 규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소급적 변경이 상업적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적 효력을 갖는 약관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 (b) 상업적 이용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약관에 포함한다.
- (c)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상업적 이용자 간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상업적 이용자가 제공하였거나 상업적 이용자에 의해 생성된 정보로서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기술적, 계약적 접근권 또는 그러한 권한의 부재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 다른 수단을 통한 상이한 거래조건 제한

1. 상업적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아닌 다른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일한 상품·서비스를 다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업적 이용자의 그러한 행위를 제한할 경우, 제한 근거를 약관에 포함하고 일반 대중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근거는 제한에 대한 주요 경제적, 상업적, 법적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타법사례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 특정한 분 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운용되고 있는 개별법에는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등의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 하도급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가맹사업법 제1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2조. 대리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납품업체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대규모유통업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서면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4항의 통지 및 제5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을 권장할 수 있다.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제정·공개된 전자약관에 입점업체가 동의하고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므로, 계약서 작성·교부·보관을 위한 추가 부담이 크지 않아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도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정위는 이미 관련법률\*에서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및 필수기재 사항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 하도급법, 기맹시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모두 무 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여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6.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 보고
- □ (7.7.) 법 제정 추진단 구성(단장 : 사무처장, 부단장 : 시장감시총괄과장)
- □ (7.31.~9.18)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입점업체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기타(승차중개 등) / 종합간담회
  - \* 플랫폼사업자 : 포털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9.17.),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 2. 향후 평가계획

o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준수 및 필수기재사항 포함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3. 종합결론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할 필요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乙의 지위에 있는 입점업체 보호 강화
- 오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제정·공개된 전자약관에 입점 업체가 동의하고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을 위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음
  - 반면,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가능성 및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편익까지 고려할 경우 사회적 총편익은 더욱 증가할 여지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br>(년) | 할인율(%) | 단위           |
|--------|--------|---------------|--------|--------------|
| 2020   | 202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겨  | I약서      | 작성·교부·보관 의무 | 부과 및 필수기재/ | 나항 규정  |
|------------|----------|-------------|------------|--------|
| 영향집단       |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 기업     | 직접       | 530.73      |            | 530.73 |
| · 소상공인     | 간접       |             |            |        |
| 피규제 일반     | 국민       |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             |            |        |
| · 소상공인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          |             |            |        |
| 국민         |          |             |            |        |
| 정부         |          |             |            |        |
| 총 합계       |          | 530.73      |            | 530.73 |
| 기업순비용      | <u> </u> | 530.73      | 연간균등순비용    | 70.09  |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 참고사항 |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부과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정량)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br>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
| 활동제목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
| 비용항목    | 노동                                                                                                                                            |
| 비용      | 530,735,161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연간균등                                                                                                                                      |
| 산식      | 연간 투입인원X연간 투입시간X시간당 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1*250*35046*8)                                                                                              |
|         | ㅇ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
| 근거설명    | 주요 내용 중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및 계약관련 사항의                                                                                                               |
|         | 변경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함                                                  |
|         | -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없을 것으로 보임                                                     |
|         | - 다만, 계약서의 작성·교부·보관 및 계약 관련 사항의 변경에<br>따른 사전통지 의무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의무로서<br>이 경우 사업자에게 새롭게 업무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제도<br>마련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 1. 연간 투입인원 : 1명                                                                                                                               |
|         | <ul>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매출액이<br/>100억 이상이거나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br/>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br/>의 임직원 1인**</li> </ul>       |
|         | * 법에서는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br>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                                                                |

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시행령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가액 합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것으로 가정

- \*\* 1명의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
- 2. 연간투입시간 : 250시간(연간 가용일수)
  - ㅇ 근무일당 1시간\*\*250일=250시간
  - \* 법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수행을 위해 근무시간 1일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
- 3. 시간당 근로임금 : 35.646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에서 '20.5월 기준 300인 이 상 정보통신업의 상용임금총액(5,464,544원)을 상용총근로 시간(153.3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평균 임금은 35,646원
- 4. 피규제자 수 : 8개
  -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매출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체 매출액의 약 10%수준으로 알려져있으므로 전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관련 업계 비공식 문의결과)
  - ② '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신규 벤처기업은 15개사 (중기부·벤처기업협회 통계)
  - ③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신규 벤처기업 중 약 1/3(34%)가 4차 산업관련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할 때 매년 5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중기부·벤처기업협 회 통계)
- ④ '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존 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반서비스 기업은 24개사로, 분석기간인 10년 기준 연평균 2.4개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중기부·벤처기업협회 통계)
- 최초 법제정 후 법규정에 맞게 양식, 업무프로세스 등을 수정한다면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없음
- ⑤ 따라서, 매년 약 8개 업체가 피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가정
-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 활동제목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
|---------|-------------------------------------------------------------------------------------------------------------------------------------|
| 편익항목    |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분쟁예방 효과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O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부과 및 계약서 필수기재사항<br>규정을 통한 편익은 각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별로<br>상이하게 발생하므로 편익을 계량하기가 매우 어려우나,<br>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         | O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측<br>가능성을 높여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乙의 지위에 있는<br>입점업체 보호를 강화                                                     |
| 근거설명    | -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제정·공개된 전자약<br>관에 입점업체가 동의하고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br>식으로 진행되므로,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을 위한<br>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 - 오히려,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 □ 간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  |  |
|---------|----------------------------------------------------------------------------------------------------------------------------------------------------------------------------------------------------------------------|--|--|
| 활동제목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  |  |
| 편익항목    |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  |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 근거설명    | <ul> <li>현재처럼 플랫폼과 입점엄체간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li> <li>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등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li> <li>이를 위해 계약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작성·교부·보관</li> </ul> |  |  |
|         |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인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  |  |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속적 성장의 토대 마련 가능

# < 규제 개요 >

|            | 1.규제사무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br>통지                                                                                                                                                                                                                                                                                                                                                                                                                                                                  | 비스 계약내용 변                                                                      | 경 및 제한 등의 사전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조, 제8<br>조, 제35조                                                                                                                                                                                                                                                                                                                                                                                                                                    |                                                                                |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4.유형                           | 신설 <b>5.입법예고</b> 2020.09.28 2020.11.09                                                                                                                                                                                                                                                                                                                                                                                                                                             |                                                                                |                                                                |
|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계약내용의<br>변경은 계약관계의 중요한 부분의 변화이므로 변경 전 충분한 기<br>간동안 사전고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br>- 현재에도 사업자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br>나, 중개계약 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에서 최소한의 기<br>준을 마련할 필요<br>○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br>비스를 일부 제한, 일시 중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용사업자 입<br>장에서는 판로가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유와 함<br>께 충분한 기간을 두어 사전고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br>- 특히, 이용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활용하지 못<br>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시장에서 이탈하<br>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사유와 함께 사전 통지가 이<br>루어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                                                                |
| 규제의<br>필요성 | 경구 온다인 들렛놈 중개시미스립자는 이용자립자에게 최고 |                                                                                                                                                                                                                                                                                                                                                                                                                                                                                    | 용사업자에게 최소 15일<br>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br>중개서비스의 일부를 제<br>최소 7일 이전에, 중개<br> 전에 내용 및 이유를 |                                                                |
|            | 8. 피 규제 집 단<br>및<br>이해관계자      |                                                                                                                                                                                                                                                                                                                                                                                                                                                                                    |                                                                                | 들랫폼 사업자)<br>남업소, 중소유통업자 등                                      |
|            | 9.규제목표                         | 계약해지의 경우와 같이<br>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 중요한 사항이 발<br>을의 지위에 있는                                                         | 중개서비스의 제한, 중지,<br>생하는 경우 사전통지의<br>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br>위협받는 것을 보호하는 |

|     |                 | 한편, 명확한 사전통지의 기준마련을 통해 분쟁예방 및 분쟁발생 시     |        |        |
|-----|-----------------|------------------------------------------|--------|--------|
|     |                 | 해결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발생 예방 및 분쟁발생시 신속한       |        |        |
|     |                 | 해결을 가능케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예측가능성<br>제고 |        |        |
|     | 10.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규제의 | 제의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적정성 | 11. 비용편익        |                                          |        |        |
|     | 분석              |                                          |        |        |
|     | (정성분석)          |                                          |        |        |
|     | 12.일 몰설 정<br>여부 | 해당없음                                     |        |        |
| 기타  | 13. 우선허용·       |                                          |        |        |
|     | 사후 규제           | 해당없음                                     |        |        |
|     | 적용여부            |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7조(중개계약내용 변경의 사전통지)  |
|     |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
|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
|     |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     | 최소 15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
|     |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기간을 준    |
|     | 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
|     | 아니한 중개계약의 변경은 그 효력이   |
|     | 없다.                   |
|     | 제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
|     | 등의 사전 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
|     |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에 따라     |
|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    |
|     | 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   |
|     | 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에,  |
|     |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    |
|     | 소 30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     | 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해야 한  |
|     |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
|     |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   |
|     |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
|     | 아니한 중개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
|     | 없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 |
|     |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계   |
|     | 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 |
|     | 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   |
|     | 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  |
|     |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  |
|     | 관하여야 한다.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안에 **도입할 예정**(안 제6조)
  - 최초 계약서 작성 후에 발생하는 계약 내용 변경 및 중요 서비스의 제한 등도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도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
- □ 이에 계약내용 변경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도록 기간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안 제7조, 제8조)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       | 대안명 | 계약 관련 주요 사항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
|-------|-----|--------------------------------------------------------------------------------------------------------------------------|
|       |     | ① 계약내용 변경의 사전통지(제7조)                                                                                                     |
|       | 내용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                                                   |
| 규제대안1 |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br>(제8조)                                                                                      |
|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서<br>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br>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중개계약을<br>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br>내용 및 이유를 통지 |
| 규제대안2 | 대안명 | 계약 관련 주요 사항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미부과                                                                                             |

|    | ㅇ 최초 계약 이후 계약 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는 |
|----|-----------------------------|
| 내용 | 경우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따라 결정하도  |
|    | 록 규정                        |

#### - 규제대안의 비교

| 구분    | 장점              | 단점               |
|-------|-----------------|------------------|
|       | 플랫폼 사업자 간 일관된 기 |                  |
|       | 준을 적용함에 따라 입점업체 | 어조병의 다른 기조이 피스되는 |
| 규제대안1 |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 |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필요하는 |
|       | 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       | 수 있음            |                  |
|       |                 | ㅇ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
|       |                 | 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협상 |
|       |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업종 |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
| 규제대안2 | 별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마 | 음                |
|       | 련할 수 있음         |                  |
|       |                 | ㅇ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업자 |
|       |                 | 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됨     |

#### - 규제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1

- · 계약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은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미 일정한 방침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에서 일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                         |      |
|        |                         |      |

#### 3. 규제목표

□ 계약 내용 변경 및 중요 서비스의 제한 등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절차적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건전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라는 **목적에 부합** 하며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도 어려움
  - 최초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이후 계약 관련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의 악 용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 영향평가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계약 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포괄적<br>개념<br>정의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네거티브<br>리스트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사후<br>평가관리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규제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으                                                                        |

| 새드박스 | 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br>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EU는 온라인 플랫폼과 상업적 이용자(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공정성·투명성 규정 제정('19.7월) 및 시행('20.7월)

#### EU 공정성·투명성 규정

#### 제3조 약관

- 1.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b) 계약 이전 단계를 포함하여 상업적 관계의 모든 거래단계에 걸쳐 상업적 이용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 (c) <u>상업적 이용자에게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중단, 종료 등 어떠한 형태의 제약</u>을 가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상업적 이용자에게 제안된 약관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통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서는 아니되며, <u>통지 기간은</u> 변경 사항의 성격과 범위, 상업적 이용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통지 기간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 관련 상업적 이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상업적 사용자가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적 또는 상업적 적응이 필요한 경우 더 긴 통지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상업적 이용자는 통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종료는, 계약에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첫 번째 문단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상업적 이용자는 첫 번째 문단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부터 어느 시점에든 서

면 또는 명확한 긍정적 조치를 통해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된 통지 기간을 포기할 수 있다.

통지 기간 동안,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관의 변경으로 인해 상업적 이용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당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여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통지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 기간을 포기하기 위한 명확한 긍정적 조치로 간주된다. 약관의 변경으로 인해 상업적 이용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당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여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통지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업적 이용자가 새로운 상품 및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지 기간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

3.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 2의 내용과 다르게 약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약관 전체 또는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제4조 서비스 제한, 중단, 종료

- 1.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상업적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별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적 이용자에게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제한이나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상업적 이용자에게 온라인 중개서비스 전체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u>최소 30일 이전</u>에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서비스 제한·중단·종료의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상업적 이용자에게 제 11조에 따른 내부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정황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한·중단·종료가 취소되는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 자는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서비스 제한·중단·종료가 있기 전에 온라인 중개서 비스를 사용하면서 생성된 개인정보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 하여 상업적 이용자의 지위를 복원시켜야 한다.
- 일본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온라인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 등 제공이 용자(입점업체)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20.6월)

####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한 법률

**제5조(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조건 등의 공시)** ④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는 날 이전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함으로써 일반 이용자의이익을 해치는 경우 및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품 서비스 등 제공 이용자에 대한 당해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조건의 변경 애용 및 이유
- 2. 계속하여 당해 특정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품 서비스 등 제공 이용자에 대한 당해 특정 디지털 프랫폼 제공의 전부 거절 그 취지 및 이유

#### o 타법사례

-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 사이버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이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의 기가 등에 대한 공정위 지침이 있음
- \* 온라인 플랫폼은 표준화된 이용약관을 통해 일반 소비자 및 입점업체와 계약하므로 이용약관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가. 사업자가 사이버물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온라인 플랫폼은 대개 약관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사전통지 방식 및 기간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크지 않아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계약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분쟁발생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정위는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 운용 경험이 충분하 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6.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 보고
- □ **(7.7.)** 법 제정 **추진단 구성**(단장 : 사무처장, 부단장 : 시장감시총괄과장)
- □ (7.31.~9.18)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입점업체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기타(승차중개 등) / 종합간담회
  - \* 플랫폼사업자 : 포털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9.17.),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 2. 향후 평가계획

오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계약의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통지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3. 종합결론

 최초 계약서 작성 후에 발생하는 계약 내용 변경 및 중요 서비스의 제한 등도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초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이후 계약 관련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의 악용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 규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 및 해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의 사전통지 의무 등 절차적 요건 을 규정할 필요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br>(년) | 할인율(%) | 단위           |
|--------|--------|---------------|--------|--------------|
| 2020   | 202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겨 | 약 관      | 련 주요 . | 사항 변경 | 시 | 사전통지  | 의무 투 | <sup>브</sup> 과 |  |
|-----------|----------|--------|-------|---|-------|------|----------------|--|
| 영향집단      | •        | Н      | 용     |   | 편익    |      | 순비용            |  |
| 피규제 기업    | 직접       |        |       |   |       |      |                |  |
| · 소상공인    | 간접       |        |       |   |       |      |                |  |
| 피규제 일반    | 국민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 기업       |        |       |   |       |      |                |  |
| · 소상공연    | <u> </u>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 일반       |        |       |   |       |      |                |  |
| 국민        |          |        |       |   |       |      |                |  |
| 정부        |          |        |       |   |       |      |                |  |
| 총 합계      |          |        |       |   |       |      |                |  |
| 기업순비용     | 용        |        |       |   | 연간균등선 | 느비용  |                |  |

| 정성분석 내용 | 및 기타 참고사항 |  |
|---------|-----------|--|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계약 관련 주요 사항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정량)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매출액 100억<br>원 이상인 사업자                                                                                                |
|---------|-----------------------------------------------------------------------------------------------------------------------------------------------|
| 활동제목    | 계약내용 변경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br>통지                                                                                                        |
| 비용항목    | 노동                                                                                                                                            |
| 비용      | 0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연간균등                                                                                                                                      |
| 산식      | 연간 투입인원X연간 투입시간X시간당 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1*250*35046*8))                                                                                            |
|         | O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br>주요 내용 중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및 계약관련 사항의                                                                            |
|         | 무료 대용 중 계약시 작성·교구·모판 및 계약관단 사용의<br>변경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공정거<br>래에 관한 일반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br>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함        |
|         | -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없을 것으로 보임                                                     |
| 근거설명    | - 다만, 계약서의 작성·교부·보관 및 계약 관련 사항의 변경에<br>따른 사전통지 의무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의무로서<br>이 경우 사업자에게 새롭게 업무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제도<br>마련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 1. 연간 투입인원 : 1명                                                                                                                               |
|         | <ul>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매출액이<br/>100억 이상이거나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br/>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br/>의 임직원 1인**</li> </ul>        |
|         | * 법에서는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시행령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가액 합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것으로 가정

- \*\* 1명의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
- 2. 연간투입시간: 250시간(연간 가용일수)
  - o 근무일당 1시간\*250일=250시간
  - \* 법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①중개거래계약 변경 시 사전통 지를 위한 근무시간 1일 0.5시간 + ②중개서비스의 제한 등 사전통지 를 위한 근무시간 1일 0.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
- 3. 시간당 근로임금 : 35.646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에서 '20.5월 기준 300인 이상 정보통신업의 상용임금총액(5,464,544원)을 상용총근로시간(153.3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평균 임금은 35,646원
- 4. 피규제자 수 : 8개
  -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매출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체 매출액의 약 10%수준으로 알려져있으므로 전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관련 업계 비공식 문의결과)
  - ② '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신규 벤처기업은 15개사 (중기부·벤처기업협회 통계)
- ③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신규 벤처기업 중 약 1/3(34%)가 4차 산업관련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할 때 매년 5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중기부·벤처기업협 회 통계)
- ④ '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존 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반서비스 기업은 24개시로, 분석기간인 10년 기준 연평균 2.4개시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맹(중기부·벤처기업협회 통계)
- 최초 법제정 후 법규정에 맞게 양식, 업무프로세스 등을 수정한다면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없음
- ⑤ 따라서, 매년 약 8개 업체가 피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가정

# □ 직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
|---------|------------------------------------------------------------------------------------------------------|
| 활동제목    | 중개계약 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
| 편익항목    | 예측가능성 제고 및 방어권 보장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플랫폼 분야는 다른 갑을관계 분야와 달리<br>플랫폼 사업자가 협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br>빈번 |
|         | * 통상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약관)을 변경하고,<br>입점업체가 일정기간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br>의한 것으로 간주                       |
|         | □ 이에 계약 내용 변경 시 일정기간 전에 미리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여 <b>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보장</b>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                          |
| 근거설명    | □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서비스 내용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종료(해지)하는 것은 입점업체 이해관계에심대한 타격을 초래                            |
|         |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br>를 제한·중지·종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미고지하는<br>경우가 있어 입점업체의 애로가 상당               |
|         | □ 서비스 제한 등의 경우 일정기간 전에 미리 제한의 내용<br>및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b>입점업체의 방어권을 보</b><br><b>장</b> 해줄 필요           |

# < 규제 개요 >

|                         | 1.규제사무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 비스업자의 불공정   | !거래행위의 금지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br>조, 제29조                                                                                                                                                                                                                                                                                                                                                                                                                                                                                           | 의 공정화에 관한 [ | 법률 제정안 제9조, 제10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2020.09.28 ~<br>2020.11.09 |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 ○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 심화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산업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  ○ 높아진 거래의존도 및 독점적 판로보유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 증가  -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 분야일수록 초기부터 건전한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한 룰을 확립할필요가 있으나,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한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                                                                                                                                                          |             |                            |
| 규제의<br>필요성              | 7.규제내용     | 중개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개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규정  - (구입강제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을 위하여 금전·재화·용역 및 그 밖으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             |                            |
|                         | 8. 피규제집단   | ㅇ 온라인 플랫폼 중개시                                                                                                                                                                                                                                                                                                                                                                                                                                                                                                     |             | •                          |
|                         | 및<br>이해관계자 | o 온라인 플랫폼 이용/<br>통업자 등 입점업체)                                                                                                                                                                                                                                                                                                                                                                                                                                                                                      | 사업사(금식점, 국박 | 입사, 앱개말업사 및 유              |

|     | 9.규제목표    | 고하여 온라인 플랫폼<br>- (투명성) 플랫폼 이<br>- (공정성) 플랫폼-입<br>성<br>이 (기대효과) 플랫폼과 |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br> 용 거래조건 사전공개<br> 점업체 간 대등한 관 |         |  |
|-----|-----------|---------------------------------------------------------------------|----------------------------------------------|---------|--|
|     | 10.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 향평가 |  |
| 규제의 |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적정성 | 11. 비용편익  |                                                                     |                                              |         |  |
|     | 분석        |                                                                     |                                              |         |  |
|     | (정성분석)    |                                                                     |                                              |         |  |
|     | 12.일 몰설 정 | 레 다 었으                                                              |                                              |         |  |
|     | 여 부       | 해당없음                                                                |                                              |         |  |
| 기타  | 13. 우선허용· |                                                                     |                                              |         |  |
|     | 사후 규제     | 해당없음                                                                |                                              |         |  |
|     | 적용여부      |                                                                     |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                        |
|     | 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공정                          |
|     | 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 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
|     |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     | 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                         |
|     | 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     | 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
|     |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
|     | 강요하는 행위                                      |
|     |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     | 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                          |
|     | 가하는 행위                                       |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     |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                          |
|     | 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
|     |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
|     |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     | 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     |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br>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     | 다.                                           |
|     |                                              |
|     |                                              |
|     |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으로 온라인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10)25.2조→ (15)54.1.조→ (19)135.3조
  -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 추세
  - 특히, 소비자들은 단일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single homing) 플랫폼이 해당 소비자들에 대한 게이트키퍼로서 독점적 접근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 \* 예를 들어 특정 배달앱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식업체들도 해당 플랫폼에 입점할 필요 (요기요 건 심결, 20.6월)
- □ 높아진 거래의존도 및 소비자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 보유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 증가
  -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sup>①</sup>중기중앙회 실태조사(2018) 결과 플랫폼별로 37~41%\*의 입점업체가 불공정행위 경험, <sup>②</sup>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2019) 결과 60.8%의 플랫폼 입점업체가 불공정행위 경험
    - \*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
  - (불공정행위 조치 사례) 요기요가 입점업체로 하여금 다른 배달앱 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최저가보장제)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 이익 제공 →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20.6월)부과
- □ 그러나,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별도법을 제정하여 대응할 필요
  -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미적용
  - ㅇ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 · 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등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조항이 전혀 없어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o 규제대안의 내용

|          | 대안명 | 공정거래법 상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br>금지행위로 규정                                             |
|----------|-----|-----------------------------------------------------------------------------------|
| 규제대안1 내용 |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5가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을 모두 금지행위에 포함 |
| 그레디니아    | 대안명 |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일부만을<br>금지행위로 규정                                              |
| 규제대안2    | 내용  |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부각된 주요 거래상지위<br>남용행위 유형만을 금지행위에 포함                                   |

#### o 규제대안의 비교

| 구분    | 장점                                                               | 단점                                                                                    |
|-------|------------------------------------------------------------------|---------------------------------------------------------------------------------------|
| 규제대안1 |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모든<br>유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br>를 규율하여 입점업체를 더<br>욱 두텁게 보호 가능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신산<br>업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br>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br>을 주장할 가능성                  |
| 규제대안2 | 일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br>한정하여 금지행위를 설정함<br>으로써 상대적으로 완화된<br>규제가 될 수 있음   | 신산업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 상, 현재 부각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이 경우 법개정 없이는 대응하는데 어려움 |

# ㅇ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양태 등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특성이 있어 머지않아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 · 법에서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유형 중 일부만을 금지 행위로 규정할 경우 입점업체 보호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
-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 분야일수록 초기부터 건전한 거래관행이 자리 잡아 성장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할 필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                         |      |
|        |                         |      |

#### 3. 규제목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을 유도 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상생·성장을 뒷받침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를 마련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규제순응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례적으로 타당함
  - o 이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은 최소한도의 안전장치이므로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에 해당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
| 기술 경쟁 중기 |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 설계된 규제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예방을 위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     |
|-----|------|-------------------------------|--|--|--|-----|
| 포괄적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되 |  |  |  | 전제로 |

| 개념<br>정의        | 하는 사항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br>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br>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네거티브<br>리스트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사후<br>평가관리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규제<br>샌드박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br>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EU는 온라인 플랫폼과 상업적 이용자(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공정성·투명성 규정 제정('19.7월) 및 시행('20.7월)

#### EU 공정성·투명성 규정

#### 제7조 차별적 취급

- 1.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상업적 이용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일반적 상업적 이용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설명은 주요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률적 고려사항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2.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상업적 웹사이트 이용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일반적 상업적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 특정 계약조건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상업적 이용자 간 계약관계가 선의와 공정성에 기초해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법률 또는 규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소급적 변경이 상업적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적 효력을 갖는 약관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 (b) 상업적 이용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약관에 포함한다.
- (c)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상업적 이용자 간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상업적 이용자가 제공하였거나 상업적 이용자에 의해 생성된 정보로서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기술적, 계약적 접근권 또는 그러한 권한의 부재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수단을 통한 상이한 거래조건 제한

1. 상업적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아닌 다른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일한 상품·서비스를 다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업적 이용자의 그러한 행위를 제한할 경우, 제한 근거를 약관에 포함하고 일반 대중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근거는 제한에 대한 주요 경제적, 상업적, 법적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타법사례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및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 점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공정거래법 제

23조의3, 가맹사업법 제12조~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제15조의2 및 제18조. 대리점법 제6조~제11조. 제12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라 '불 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 공정거래법 제24조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바, 피규제자의 추가적 비용 부담이 없기에 규제 준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정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행위 규정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6.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
|-------------------------|---------------------|
|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 보고       |                     |

- □ (7.7.) 법 제정 추진단 구성(단장 : 사무처장, 부단장 : 시장감시총괄과장)
- □ (7.31.~9.18)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입점업체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기타(승차중개 등) / 종합간담회
  - \* 플랫폼사업자 : 포털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9.17.),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 2. 향후 평가계획

이 지속적 시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등을 점검하고 시정할 예정

# 3. 종합결론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을 조성할 필요
-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여 Z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것도 아님
- 오히려,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은 최소한도의 안전장치이므로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에 해당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br>(년) | 할인율(%) | 단위           |
|--------|--------|---------------|--------|--------------|
| 2020   | 202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규제대안1 : 공정거래법 상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금지행위로 규 영향집단 편익 비용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침 | 남고사항 |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공정거래법 상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 숙박업소, 중소유통업자 등<br>입점업체)                                                                                                                                                                                              |  |  |
|---------|-----------------------------------------------------------------------------------------------------------------------------------------------------------------------------------------------------------------------------------------|--|--|
| 활동제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
| 비용항목    | 법규정 준수(행정부담)                                                                                                                                                                                                                            |  |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         | <ul> <li>○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br/>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br/>서도 적용*되고 있음</li> <li>* 요기요가 입점업체로 하여금 다른 배달앱 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br/>는 것을 금지(최저가보장제)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제공<br/>→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20.6월)부과</li> </ul> |  |  |
|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br>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br>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br>니된다.                                                                                                  |  |  |
| 근거설명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 과 거래하는 행위                                                                                                                                                                                                 |  |  |
|         |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u>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u>                                                                                                                                                                                                 |  |  |
|         |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  |
|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         | 가.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br>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
|         | 나.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br>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제                                                                                                                                                                           |  |  |

하는 행위

- 다.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 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제시하 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마.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지구언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 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유형과 동일하므로, 이미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 직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 숙박업자, 유통업자, 앱개발<br>자 등 입점업체)                                                                                                   |
|---------|---------------------------------------------------------------------------------------------------------------------------------------------------|
| 활동제목    | 공정거래법 상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금지행위로<br>규정                                                                                                             |
| 편익항목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예방 등 입점업체<br>보호 강화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ul> <li>오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보다 공정한 협상 가능</li> <li>또한 법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li> </ul> |
|         | 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br>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

# < 규제 개요 >

|            | 1.규제사무명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        |                            |  |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2020.09.28 ~<br>2020.11.09 |  |  |
| 규제의<br>필요성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10)25.2조→(15)54.1.조→(19)135.3조  ○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산업분야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  ○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플랫폼이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게이트키 |        |                            |  |  |
|            | 7.규제내용                    | O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거래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        |                            |  |  |
|            | 8. 피 규제 집 단<br>및<br>이해관계자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br>○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 숙박업소, 중소유통업자 등<br>입점업체)                                                                                                                                                             |        |                            |  |  |
|            | 9.규제목표                    | ㅇ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        |                            |  |  |
| 규제의<br>적정성 | 10.영 향평가<br>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 향평가                    |  |  |

|    | 11. 비용편익  |                   |
|----|-----------|-------------------|
|    | 분석        |                   |
|    | (정성분석)    |                   |
|    | 12.일 몰설 정 | 해당 없음             |
|    | 여부        | 에당 ᆹ <del>ᆷ</del> |
| 기타 | 13. 우선허용· |                   |
|    | 사후 규제     | 해당 없음             |
|    |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① 온라인 플 |
|     | 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     |
|     | 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    |
|     | 유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
|     |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    |
|     | 한하는 행위 또는 중개계약의 이행과    |
|     | 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    |
|     | 는 아니 된다.               |
|     | 1. 제17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 |
|     | 서비스업자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
|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
|     |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
|     | 조사에 대한 협조              |
|     | 3. 제25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 |
|     | 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    |
|     | 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sup>\*</sup>으로 온라인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10)25.2조→ (15)54.1.조→ (19)135.3조
  -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 추세
- □ 높아진 **거래의존도** 및 독점적 **판로확보**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 증가
  - \* 중기중앙회 실태조사('18) 결과 오픈마켓 등 입점업체의 37~41%가 불공정행위 경험,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19)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60.8%의 불공정행위 경험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ㅇ 규제 대안의 내용
-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거래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 ㅇ 선택 근거

-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입점업체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에 소극적인 경향
-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입점업체의 신고·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한 원활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필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                         |      |
|        |                         |      |

### 3. 규제목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을 유도 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상생·성장을 뒷받침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입점업체의 신고·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한 피해규제를 위한 보복조치 금 지규정은 금지행위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금지행위 등을 둔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필요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 영향평가 |      | 시장유인적 | 일몰설정 | 우선허용· |
|----------|------|------|-------|------|-------|
| 기술 경쟁 중기 |      | 규제설계 | 여부    | 사후규제 |       |
|          |      |      |       |      |       |
|          |      |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중기영향평가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를 전제로 설계된 규제

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예방을 위해 일관되게 지속 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
| 포괄적<br>개념<br>정의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를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를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 네거티브<br>리스트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를 전제로 하는 사<br>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 사후<br>평가관리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를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 규제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를 전제로 하는 사                                                                         |  |  |

| _  |        |   |     |
|----|--------|---|-----|
| מג | $\Box$ | H | - 入 |
| 40 | =      | = | i ( |

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o 타법사례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및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 점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공정거래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불공정거래해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 3.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공정거래법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 공정거래법 제24조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보복조치 금지 규정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바, 피규제자의 추가적 비용 부담이 없기에 규제 준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정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보복조치 금지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6.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 보고
- □ (7.7.) 법 제정 추진단 구성(단장 : 사무처장, 부단장 : 시장감시총괄과장)

- □ (7.31.~9.18)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입점업체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기타(승차중개 등) / 종합간담회
  - \* 플랫폼사업자 : 포털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9.17.),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 2. 향후 평가계획

이 지속적 시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행위 발생 등을 점검하고 시정할 예정

### 3. 종합결론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할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입점업체의 신고·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은 거래상약자의 지위에 있는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입점업체의 신고·분쟁조정 신 청 등을 통한 원활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형 | 행년도 | 분석대상기긴<br>(년) | 할인율 | 단(%) 단위      |
|--------|------|-----|---------------|-----|--------------|
| 2020   | 202  | 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     |               |     |              |
| 영 향진 다 |      | 비용  |               | 펴 인 | 수비용          |

| 규제대안1:     | 규제대안1:   |    |         |     |  |  |  |
|------------|----------|----|---------|-----|--|--|--|
| 영향집단       |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  |
| 피규제 기업     | 직접       |    |         |     |  |  |  |
| · 소상공인     | 간접       |    |         |     |  |  |  |
| 피규제 일반     | 국민       |    |         |     |  |  |  |
| 피규제자 이외    | 기업       |    |         |     |  |  |  |
| · 소상공연     | <u> </u> |    |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          |    |         |     |  |  |  |
| 국민         |          |    |         |     |  |  |  |
| 정부         |          |    |         |     |  |  |  |
| 총 합계       |          |    |         |     |  |  |  |
| 기업순비용      | 2        |    | 연간균등순비용 |     |  |  |  |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  |  |  |  |
|---------|------------------------------|--|--|--|--|--|
| 활동제목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조치 금지         |  |  |  |  |  |
| 비용항목    | 행정부담                         |  |  |  |  |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  |  |
| 근거설명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조치 금지<br>행정부담 |  |  |  |  |  |

### □ 직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 숙박업자, 유통업자, 앱개발<br>자 등 입점업체) |  |  |  |
|---------|-------------------------------------------------|--|--|--|
| 활동제목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금지                          |  |  |  |
| 편익항목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보복조치 금지를 통한 입점업체<br>보호 강화       |  |  |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
| 근거설명    | □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입점업체는 플랫폼 사업자의                 |  |  |  |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O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신고·분 쟁조정 신청 등을 통한 원활한 피해구제를 가능해질 것으 로 기대

# < 규제 개요 >

|            | 1.규제사무명                    | 서면실태조사 근거 신설                                                                                                   |           |                            |  |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5조, 제<br>35조                                                                    |           |                            |  |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            | 4.유형                       | 신설                                                                                                             | │5 입법예고 │ | 2020.09.28 ~<br>2020.11.09 |  |  |
|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O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현황 및 불공정 거래관행 존재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                            |  |  |
| 규제의<br>필요성 | 7.규제내용                     | ㅇ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서면으로<br>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           |                            |  |  |
|            | 8. 피 규제 집 단<br>및<br>이해관계자  | o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사업자 및 입점업체                                                                                       |           |                            |  |  |
|            | 9.규제목표                     | O 서면실태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  |
|            | 10.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
| 규제의        |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적정성        | 11. 비용편익<br>분석<br>(정성분석)   |                                                                                                                |           |                            |  |  |
|            | 12.일 몰설 정<br>여부            | 해당 없음                                                                                                          |           |                            |  |  |
| 기타         | 13. 우선허용·<br>사후 규제<br>적용여부 | 해당 없음                                                                                                          |           |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23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 |
|     | 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
|     |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
|     |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    |
|     | 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   |
|     | 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   |
|     | 표하여야 한다.              |
|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  |
|     | 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
|     |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  |
|     | 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
|     |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
|     | 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
|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
|     | 수 있다.                 |
|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  |
|     | 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
|     | 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  |
|     | 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  |
|     | 로 알려야 한다.             |
|     |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  |
|     |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   |
|     | 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
|     | 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
|     |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오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실태 점검 및 불공정 거래관행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서면실태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에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와는 조사목적 및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음
  -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다만, 조사대상자의</u>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이 경우, 자료제출이 전적으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달려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는 사업자들의 자료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이에, 서면실태조사의 절차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제정안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자 들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
    - \* 아울러, 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됨('20.6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o 규제대안의 내용

|       | 대안명 | 서면실태조사의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                                                   |
|-------|-----|------------------------------------------------------------------------|
| 규제대안1 | 내용  | 제정안에 서면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근거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       | 대안명 | 별도의 규정 마련 없이 현행처럼 실태조사를 실시                                             |
| 규제대안2 | 내용  | 제정안에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의 자발<br>적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 실시 |

### o 규제대안의 비교

| 구분    | 장점                                                  | 단점                                                                                                                         |
|-------|-----------------------------------------------------|----------------------------------------------------------------------------------------------------------------------------|
| 규제대안1 | 서면실태조사의 명확한 근거<br>를 바탕으로 조사의 신뢰도<br>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 사<br>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 규제대안2 | 현행과 같으므로 별도의 규<br>제가 발생하지 않음                        | 사업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br>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br>어려움<br>또한,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br>거가 없어 절차적인 통제가 어<br>렵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도<br>저해됨 |

### ㅇ 대안의 선택 근거

- 현행과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 존한 조사만으로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또한,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사업자들의 자료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 서면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이 없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절차적인 통제가 어렵기에 피규제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
- 따라서, 서면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들의 권익도 보호할 필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                         |      |
|        |                         |      |

### 3. 규제목표

| □ 서면 | 실태조사의 | 신뢰성 | 제고를 | 통해 | 효율적인 | 법집행에 | 7] | 여 |
|------|-------|-----|-----|----|------|------|----|---|
|------|-------|-----|-----|----|------|------|----|---|

| 서면실태 | 조사 | 절차 ! | 및 자회 | 료제출 | 요구의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하여 | 사 |
|------|----|------|------|-----|-------|------|-----|-------|---|
| 업자들의 | 예측 | 가능성  | ! 제고 | 및 구 | 1의 보호 | 고 강회 | -   |       |   |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실태파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며, 실태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에 해당
-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의 내용과 비교 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없음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한 규제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등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  |
|-----|------|---------------------------------|--|--|--|--|
| 포괄적 |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등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 |  |  |  |  |

| 개념<br>정의        | 위한 사항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br>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등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br>위한 사항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br>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네거티브<br>리스트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등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br>위한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사후<br>평가관리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등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br>위한 사항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규제<br>샌드박스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등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br>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br>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o 타법사례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 특정한 분

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운용되고 있는 개별 법\*에는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 하도급법 제22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 기맹사업법 제33조의2, 대리점법 제27조의2
- \*\* 아울러. 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됨('20.6월)
-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정위가 기존에도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분야의 현황 파악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해왔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시장의 거래실태 파악 등은 공정위의 본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으로 집행 가능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매년 2,500만원의 위탁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형성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산업적 이익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6.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
|-------------------------|---------------------|
|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 보고       |                     |

- □ (7.7.) 법 제정 추진단 구성(단장 : 사무처장, 부단장 : 시장감시총괄과장)
- □ (7.31.~9.18)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입점업체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기타(승차중개 등) / 종합간담회
  - \* 플랫폼사업자 : 포털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9.17.),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 2. 향후 평가계획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규제자 의견 청취하고 실태조사 절차 및목표 등에 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실시

### 3. 종합결론

- o 현행과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 존한 조사만으로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또한,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사업자들의 자료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서면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이 없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절차적인 통제가 어렵기에 피규제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
- 따라서, 서면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들의 권익도 보호할 필요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br>(년) | 할인율(%) | 단위           |
|--------|--------|---------------|--------|--------------|
| 2020   | 202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서  | 규제대안1 : 서면실태조사의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 |    |         |     |  |  |  |
|------------|------------------------------|----|---------|-----|--|--|--|
| 영향집단       | <b>=</b>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  |
| 피규제 기업     | 직접                           |    |         |     |  |  |  |
| · 소상공인     | 간접                           |    |         |     |  |  |  |
| 피규제 일반     | 국민                           |    |         |     |  |  |  |
| 피규제자 이외    | 기업                           |    |         |     |  |  |  |
| · 소상공연     | <u> </u>                     |    |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                              |    |         |     |  |  |  |
| 국민         |                              |    |         |     |  |  |  |
| 정부         |                              |    |         |     |  |  |  |
| 총 합계       |                              |    |         |     |  |  |  |
| 기업순비용      | <u> </u>                     |    | 연간균등순비용 |     |  |  |  |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서면실태조사의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
|---------|------------------------------------------------------------------------------------------------------------------------------------------------------------------------------------------------------------------------------------------------------------------------------------------|
| 활동제목    |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 편익항목    | 실태조사의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br>권익 보호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ul> <li>현행과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는 전적으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li> <li>또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는 사업자들의 자료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li> <li>서면실태조사의 절차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제정안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li> </ul> |

### □ 간접편익

| (정성)세분류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  |
|---------|---------------------------------------------------------------------------------------------------------------------------------------------------------------------------------------------------------|--|
| 활동제목    |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
| 편익항목    | 실태조사 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권<br>익보호                                                                                                                                                                 |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 근거설명    | <ul> <li>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br/>정거래관행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br/>에 이바지할 수 있음</li> <li>공정한 거래환경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br/>한 전제조건으로 이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마련<br/>을 위해 실태조사의 근거규정이 필요</li> </ul> |  |

□ 비용

| (정량)세분류 | 실태조사 대상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
|---------|--------------------------------------------------------------------------------------------------------------------------------------------------------------------------------------------|
| 활동제목    | 서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                                                                                                                                                                          |
| 비용항목    | 운영                                                                                                                                                                                         |
| 비용      | 0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연간균등                                                                                                                                                                                   |
| 산식      | 위탁사업비(25000000)                                                                                                                                                                            |
| 근거설명    | □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사례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sup>1)</sup> 위탁사업비2,500만원(2020년)과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sup>2)</sup> 업무용역비인 2,500만원(2020년)을 준용하여 매년 2,500만원으로 추정함 |

<sup>1) 「</su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sup>2) 「</sup>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 규제 개요 >

| 1.규제사무명    |                         | 법 위반 중개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5조                                                                                                                                                  |                                         |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4.유형                    | 신설                                                                                                                                                                                 | 5 인번예고                                  | 2020.09.28 ~<br>2020.11.08                  |
|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정하고 있는 계약서                                                                                                                                                                         | 작성, 교부, 보관의무<br>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 한 법률 제정안에서 규<br>와 불공정거래행위 및<br>. 직접적인 구제수단을 |
| 규제의<br>필요성 | 7.규제내용                  | O 우월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 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공표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                                             |
|            | 8 . 피 규제 집 단<br>및       | o 온라인 플랫폼 중개                                                                                                                                                                       |                                         | 랫폼 사업자)<br>업자 및 유통업자 등 입                    |
|            | 스<br>이해관계자              | 점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9.규제목표                  | ㅇ 법위반 행위에 대해                                                                                                                                                                       | 신속하고 직접적인 조                             | 도치 가능                                       |
|            | 10.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규제의        |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적정성        | 11. 비용편익                |                                                                                                                                                                                    |                                         |                                             |
|            | 분석                      |                                                                                                                                                                                    |                                         |                                             |
|            | (정성분석)                  |                                                                                                                                                                                    |                                         |                                             |
|            | 12.일 몰설 정               | 해당없음                                                                                                                                                                               |                                         |                                             |
|            | 여부                      |                                                                                                                                                                                    |                                         |                                             |
| 기타         | 13. 우선허용·               |                                                                                                                                                                                    |                                         |                                             |
|            | 사후 규제                   | 해당없음                                                                                                                                                                               |                                         |                                             |
|            | 적용여부                    |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25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
|     | 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 |
|     | 조의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
|     |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위반 행위의        |
|     | 중지,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받    |
|     | 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
|     |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유통환경 변화로 온라인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급증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10)25.2조→ (15)54.1.조→ (19)135.3조
  -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 추세
  - o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발생 우려도 증가
-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
  - 온라인 플랫폼의 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시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선택 근거) 과징금, 과태료 및 벌칙 등을 통해서만 법위반 행위를 제재할 경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시정명령할 수 있도 록 규정할 필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3. 규제목표

□ 시정명령을 통해 법위반 상황의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플랫폼 입점업체의 피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및 특정 분야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 등과 비교하여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없으므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규제순응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례적 타당성이 존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기술 경쟁 중기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위반 행위로 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로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 포괄적<br>개념<br>정의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br>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br>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네거티브<br>리스트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사후<br>평가관리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규제<br>샌드박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제로<br>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br>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o 타법사례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다시 두거나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집행 중임
- 공정거래법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이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

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법안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더라도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정위의 본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법 제정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으로 집행 가능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6.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 보고
- □ (7.7.) 법 제정 추진단 구성(단장 : 사무처장, 부단장 : 시장감시총괄과장)
- □ (7.31.~9.18)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입점업체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기타(승차중개 등) / 종합간담회
  - \* 플랫폼사업자 : 포털 / 오픈마켓 / 배달앱 / 숙박앱 / 앱마켓
-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9.17.),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 2. 향후 평가계획

오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필요사항 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진행

### 3. 종합결론

- 업위반 행위를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더라도 이를 통해 실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법위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직접 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따라서, 제정법안에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여 피해업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별 첨

#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저   | 시행년도 | 분석대<br>(년 |     | 할인율(% | 5)  | 단위           |
|------------|------|------|-----------|-----|-------|-----|--------------|
| 2020       | 2022 |      | 10        |     | 4.5   |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      |      |           |     |       |     |              |
| 영향집단       |      | 비용   |           | 편익  |       | 순비용 |              |
| 피규제 기업     | 직접   |      |           |     |       |     |              |
| · 소상공인     | 간접   |      |           |     |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      |      |           |     |       |     |              |
| 국민         |      |      |           |     |       |     |              |
| 정부         |      |      |           |     |       |     |              |
| 총 합계       |      |      |           |     |       |     |              |
| 기업순비용      |      |      |           | 연간권 | 등순비용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 규제 개요 >

|            | 1.규제사무명                    | 동의의결을 신청한 중개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                            |  |  |  |  |
|------------|----------------------------|--------------------------------------------------------------------------------------------|--------|----------------------------|--|--|--|--|
| 기본         | 2.규제조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                            |  |  |  |  |
| 정보         | 3.위임법령                     |                                                                                            |        |                            |  |  |  |  |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2020.09.28 ~<br>2020.11.09 |  |  |  |  |
|            | 6.추진배경<br>및 정부개입<br>필요성    | - 이 경우,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동의의<br><b>및 정부개입</b><br>결 신청을 통해 법위반 판단 및 공정위의 조치를 받지 않게 되었 |        |                            |  |  |  |  |
| 규제의<br>필요성 | 7.규제내용                     |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 신청자가 동의의<br>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br>가능함을 명시    |        |                            |  |  |  |  |
|            | 8 . 피 규제 집 단<br>및<br>이해관계자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br>○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 숙박업소, 중소유통업자 등<br>입점업체)             |        |                            |  |  |  |  |
|            | 9.규제목표                     | O 미이행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증가하는 제재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  |  |  |
| 규제의        | 10.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  |  |
|            |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적정성        | 11. 비용편익<br>분석<br>(정성분석)   |                                                                                            |        |                            |  |  |  |  |
|            | 12.일 몰설 정<br>여부            | 해당없음                                                                                       |        |                            |  |  |  |  |
| 기타         | 13. 우선허용·<br>사후 규제<br>적용여부 | 해당없음                                                                                       |        |                            |  |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28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 |
|     |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
|     |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     |
|     | 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  |
|     |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  |
|     | 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    |
|     |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   |
|     |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법적 불안정성 조기 해소 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안 제27조)
  - \* 동의의결제도: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 공정거래법('11.12.2.), 표시·광고법('14.1.28.)에는 기도입
  - 한편, 동의의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공급업자는 위법성 판단 및
     그에 수반되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는 부과받지 않으면서도,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 이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할 필요(안 제28조)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       | 대안명 |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항 미규정                                                     |
|-------|-----|-------------------------------------------------------------------------------|
| 규제대안1 | 내용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 규제대안2 | 대안명 |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       | 내용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 준용조항(제51조의4)에 따라 동의의결 취소만 가능 |

# o 규제대안의 비교

| 구분    | 장점             | 단점 |
|-------|----------------|----|
| 규제대안1 | ㅇ 반복적 부과가 가능하여 |    |

|       | 강력한 이행력 확보가<br>가능<br>ㅇ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br>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br>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과<br>정합성 측면에서 타당 | o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동의<br>의결 이행 지연에 따른 이득<br>보다 낮은 경우, 신청인이<br>동의의결의 이행을 지연할<br>유인이 생김                                 |
|-------|--------------------------------------------------------------------------------------|-----------------------------------------------------------------------------------------------------------------|
|       | o 도이이겨 ㅎ 시처이이                                                                        | o 동의의결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br>신속한 피해구제 등 동의의<br>결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br>하기 어려워짐                                               |
| 규제대안2 | o 동의의결 후, 신청인의<br>동의의결 이행에 대한 부담이<br>없음                                              | o 특히, 이행력 확보를 위한<br>제재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br>원사건의 처분시효가 경과될<br>경우,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br>동의의결의 이행 모두 기대할 수<br>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 발생 |

- o 규제대안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
  -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반복적 부과가 가능해 **동의의 결의 이행력을 적절히 담보**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판단됨
  - 특히, 동의의결제도가 기도입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도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어,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      |
|        |                         |      |
|        |                         |      |

# 3. 규제목표

□ 미이행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증가하는 제재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력을 확보**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이행강제금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제도
  -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에 그칠 경우에는 **동의의결제도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 영향평가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자발적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로 보조금, 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 설계의 대상이 아님

# - 일몰설정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자발적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 로서 일몰 설정은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포괄적<br>개념<br>정의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의 이행을<br>담보하여 피해 법위반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br>위한 사항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br>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유연한<br>분류<br>체계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의 이행을<br>담보하여 피해 법위반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br>위한 사항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br>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네거티브<br>리스트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의 이행을<br>담보하여 피해 법위반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br>위한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사후<br>평가관리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의 이행을<br>담보하여 피해 법위반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br>위한 사항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br>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규제<br>샌드박스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의 이행을<br>담보하여 피해 법위반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br>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br>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미국과 EU는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유사한 성격의

#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 ① 미국은 동의의결(Consent Order) 미이행에 대해 \$10,000 이하의 벌금 (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15. U.S.C. §45(1))
  - \* 형사소송을 통해 부과되는 형사벌금과는 다르며, 1일 단위로 부과되는 점에서 이행강제금과 유사

#### 15. U.S.C. §45(I) Penalty for violation of order

Any person, partnership or corporation who violates an order of the Comission after it has become final, and while such order is in effect, shall forfeit and pay to the United States a civil penalty of not more than \$10,000 for each violation, which shall accrue to the United States and may be recovered in a civil action brought b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Each separate violation of such an order shall be a separate offense, except that in a case of a violation through continuing failure to obey or neglect to obey a final order of the Commission, each day of continuance of such failure or neglect shall be deemed a separate offense. In such actions,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are empowered to grant mandatory injunctions and such other and further equitable relief as they deem appropriate in the enforcement of such final orders of the Commission.

② EU는 동의의결(Commitment) 미이행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fine)을 부과하거나 1일당 전년도 1일 평균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집행규칙 제23조, 24조)

#### Regulation No. 1/2003 Art. 23 Fines

- 2. The Commission may by decision <u>impose fines</u> on undertakings and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ere, eithe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c) <u>they fail to comply with a commitment</u> made binding by a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9.
- 4. The financial liability of each undertaking in respect of the payment of the fine shall not exceed 10% of its total turnover in the preceding business year.

#### Regulation No. 1/2003 Art. 24 Periodic penalty payments

- 1. The Commission may, by decision, <u>impose</u> on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u>periodic penalty payments not exceeding 5% of the average daily turnover in the preceding business year per day and calculated from the date appointed by the decision, in order to compel them:</u>
- (c) to comply with a commitment made binding by a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9.

### o 타법사례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해 1일당 200만 워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sup>\*</sup>
  - \* 공정거래법 제51조의5, 표시·광고법 제7조의5
- 공정거래법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 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다.
- 표시·광고법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 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다.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의의결제도 및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공정거래법(2011년), 표시·광고법(2014년)에 규정된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규제자의 이해도 및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피규제자는 자발적으로 동의의결을 선택하는 것이고, 심사보고서 및 최종 동의의결서 주문사항에 피규제자(신청인)에게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기재하는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정위는 이미 공정거래법(2011년), 표시・광고법(2014년) 상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집행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음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은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o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2. 향후 평가계획

o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법위반 판단 및 공정위의 조치를 받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통해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

# 3. 종합결론

o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br>(년) | 할인율(%) | 단위           |
|--------|--------|---------------|--------|--------------|
| 2020   | 2022   | 10            | 4.5    | 백만원,<br>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동 | 의의결                                          | 를 미이행에 | 대한 별     | 도의 | 제재조항  | 미규정 | 4 |     |  |
|-----------|----------------------------------------------|--------|----------|----|-------|-----|---|-----|--|
| 영향집단      | •                                            | 비용     | <u>)</u> |    | 편익    |     |   | 순비용 |  |
| 피규제 기업    | 직접                                           |        |          |    |       |     |   |     |  |
| · 소상공인    | 간접                                           |        |          |    |       |     |   |     |  |
| 피규제 일반    | 국민                                           |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 기업                                           |        |          |    |       |     |   |     |  |
| · 소상공연    | <u>)                                    </u> |        |          |    |       |     |   |     |  |
| 피규제자 이외   | 일반                                           |        |          |    |       |     |   |     |  |
| 국민        |                                              |        |          |    |       |     |   |     |  |
| 정부        |                                              |        |          |    |       |     |   |     |  |
| 총 합계      |                                              |        |          |    |       |     |   |     |  |
| 기업순비용     | 2                                            |        |          | 연. | 간균등순비 | 용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동의의결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항 미규정〉

# 조문별 제정이유서

# 1.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가. 제정 이유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제정안의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나. 제정 내용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목적 제시
-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다. 입법효과

○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화

# 2. 법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규정(안 제3조)

# 가. 제정 이유

○ 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 나. 제정 내용

- (역외적용) 사업자의 소재지 및 준거법률에 관계 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
- (규모요건)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판매가액 합계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규모를 지닌 플랫폼에 대해서만 법적용

#### 다. 입법효과

○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 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 가. 제정 이유

○ 공정거래와 관련된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 항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

#### 다. 입법효과

○ 법률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규제 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하고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

# 4. 신의성실 원칙(안 제5항)

# 가. 제정 이유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양 당사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상 의무를 제시

# 나. 제정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 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다. 입법효과

- 거래의 양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과행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5.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안 제6조)

#### 가. 제정 이유

○ 분쟁발생 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 이 용사업자의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어 계약서와 관련한 명 시적 규정이 필요

#### 나. 제정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주요 거래조건 및 분쟁예방을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

#### 다. 입법효과

- 계약 주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 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
- 6.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계약 내용 변경 및 제한 등의 사전통지 (안 제7조, 제8조)

### 가. 제정 이유

○ 계약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에 대해 일정기간 전에 미리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개계약 변경의 효력

은 부인함(제7조)

○ 중개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해야하며,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개계약 해지의 효력 은 부인함(제8조)

#### 다. 입법효과

○ 계약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 시 사전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방어권 보장 강화

#### 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9조)

#### 가. 제정 이유

○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부당한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손해의 전가, 경영간섭 행위 등 금지

# 다. 입법효과

○ 주요 금지행위 유형을 명문화하여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 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

# 8. 보복조치의 금지(안 제10조)

# 가. 제정 이유

○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 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불공정행위 신고, 분 쟁조정 신청 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을 예방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 조 및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중 개서비스업자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
  - \* ①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중개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③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입법효과

-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 고·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한 원활한 피해구제 가능
- 9.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안 제11항)

#### 가. 제정 이유

- 양면시장인 플랫폼 특성 상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는 상호 이해관 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
  - \* 플랫폼의 간접 네트효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입점업체를 확보한 플랫폼은 더 많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입점업체의 판매량 증대로 연결

# 나. 제정 내용

○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약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약 체결 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시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다. 입법효과

○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

#### 10.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2조 내지 제21조)

#### 가. 제정 이유

○ 다수의 영세 입점업체가 존재하는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공익대표 3, 사업자 대표 3, 입점업체 대표 3)으로 구성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제12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은 공익대표 위원 위촉을 제한함(제13조)
- 협의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위원 1 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나누어 운영(제14조)
-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 으로서 제6조부터 제10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제16조)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 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 사자에게 분쟁 관련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18조)

# 다. 입법효과

○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대한 신속하고 효 과적인 피해구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적 불안정 성 조기 해소

# 11. 위반행위의 조사(안 제22조)

#### 가. 제정 이유

○ 온라인 플랫폼 거래관행 개선 및 불공정행위 피해 해소를 위해 법위 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공정위 조사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

#### 나. 제정 내용

○ 누구든지 이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가 있거 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 또는 미처분의 근거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의결 서 작성 시에는 의결서 정본 송부)

#### 다. 입법효과

○ 신고 및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예측가능 성 제고 및 권리·의무 보호 강화

#### 12.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안 제23항)

#### 가. 제정 이유

○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의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고 파악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표
- 조사범위, 기간, 내용,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범위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다. 입법효과

○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법위반 혐의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함 으로써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

### 13. 처분대상의 제한(안 제24조)

#### 가. 제정 이유

○ 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시효를 설정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법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 하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않음
- 다만, 당사자가 자료 열람·복사 요구에 따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 확정시까지 시효를 중지함

#### 다. 입법효과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의 시효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

# 14.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안 제25조, 제26조)

# 가. 제정 이유

○ 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이 필요

# 나. 제정 내용

○ (시정명령)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

무(6조1항 및 2항), 불공정행위 금지(9조1항), 보복조치행위 금지(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부과

- 시정명령의 내용은 법 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기타 법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
- (시정권고) 공정위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 가능
- 사업자는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하고, 수락 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다. 입법효과

○ 피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가능

# 15. 동의의결(안 제27조, 제28조)

### 가. 제정 이유

○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고, 다수의 입점업체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조사(심의) 대상 사업자는 불공정 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신청 가능(제27조)
- 위원회는 시정방안이 시정명령 등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입점업체 보호 등에 있어 적절한 경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가능
- 동의의결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제28조)

# 다. 입법효과

○ 신속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피해 구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적 불안정성 조기해소 가능

○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6. 과징금(안 제29조)

#### 가. 제정 이유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나. 제정 내용

-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6조1항 및 2항), 불공정행위 금지(9조1항), 보복조치행위 금지(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위반 금액의 2배 이내로 하되.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억 원 내에서 부과

# 다. 입법효과

○ 법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을 통해 법위반 행위 처벌 및 향후 재발방지

# 17.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 가. 제정 이유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및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온라인 플랫

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다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의무제 도입
- 현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는 관련증거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 법상 문서제출명령(제344조)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고려
  - \* ①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②서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의 자료는 제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점. ③명령 불응시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 등

#### 다. 입법효과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온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 구제 강화

# 18.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조(안 제31항)

#### 가. 제정 이유

○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공정위는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 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 의뢰·자료요청 가능

# 다. 입법효과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법집행의 효과 극대화

# 19. 공정거래법 준용규정(안 제32조)

# 가. 제정 이유

○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제 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

#### 나. 제정 내용

○ 심의·의결 절차, 조사·의견청취 절차, 이의신청·시정명령 집행정치·소 의 제기,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준용

#### 다. 입법효과

○ 공정거래법 준용규정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 20. 형벌 규정(안 제33조, 제34조)

#### 가. 제정 이유

○ 신산업인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형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보복조치 행위\*(제10조) 및 공정거래법 등 타법에서 형벌부과 대상 으로 정하고 있는 조사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 부과(제33조)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 ① 시정명령 불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② 허위감정행위(1억원 이하 벌금)
    - ③ 비밀누설 또는 목적외 이용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 에 대한 양벌규정 마련(제34조)

#### 다. 입법효과

○ 가벌성 높은 행위에 한정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엄정한 법집행과 동시에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1. 과태료(안 제35조)

#### 가. 제정 이유

○ 법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따져 형벌, 과징금 부과 행위 외 과태료 부과가 적합한 행위를 구별하여 제재할 필요

#### 나. 제정 내용

○ 법위반 행위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구 분                        | 대상 행위                                                                              |
|----------------------------|------------------------------------------------------------------------------------|
| 2억원 이하<br>(임원 등은 5천만원 이하)  | - 조사 거부·방해·기피                                                                      |
| 1억원 이하<br>(임원 등은 1천만원 이하)  |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br>-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 거부 또는 허위 보고·제출<br>-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거부 또는 허위 제출 |
| 1억원 이하<br>(임원 등은 500만원 이하) | -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거부 또는 허위 제출 강요                                                    |
| 1천만원 이하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보존의무 위반<br>- 서비스 제한·중지시 사전통지의무 위반                                  |
| 100만원 이하                   | - 질서유지 명령 위반                                                                       |

### 다. 입법효과

○ 위법한 행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재하여 재발방지 및 예방

# 22. 고발(안 제36조)

# 가. 제정 이유

○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벌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제시할 필요

### 나. 제 • 개정 내용

○ 제33조제1항의 죄는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소가 제기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함

# 다. 입법효과

○ 고발과 관련한 절차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규제 대상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